

중국 광서장족자치구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2007. 2. 28.(수)  
제257회 임시회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7년 2월 15 일
- 회부일자 : 2007년 2월 20 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-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7.2.23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경제투자본부장 정 정 순)

가. 제안 이유

- 중국 동북부지역(흑룡강성)에 편중되어 있는 교류관계를 중국 서남부 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정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對중국 교류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경제적·문화적 가치 추구

- 광서장족자치구는 중국의 아세안 10개국 진출의 교량 역할을 하는 곳으로 우리 도가 향후 아세안 10개국과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 가능
- 광서장족자치구와 우리 도는 2001. 6. 7 우호협력교류의향서 체결 이래
  -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간중 광서장족자치구 정부사절단 및 기업대표단 파견
  - 2004~2005 CHINA-ASEAN EXPO에 우리도 대표단 참가
  - 2005년 광서장족자치구 이금조(李金阜)부주석 우리 도 방문 양지역 경제협력협약 체결 등
- 그동안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현재 교류의 최고 단계인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,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에 의거 자매결연협정서를 체결하고자 함

## 나. 추진 경위

- '01. 6 조남기 중국 前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주선으로 양지역 우호협력교류의향서 체결
  - 장 소 : 서울, 서명자 : 유의재 행정부지사 ↔ 張文學부주석
- '02. 9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간중 축하사절단 및 기업대표단방도
- '03. 12 광서장족자치구 외사판공실 관계자 등 실무대표단 방도
- '04. 6 행정부지사 광서장족자치구 방문 우호교류 증진방안 모색  
⇒ 광서장족자치구 장문학부주석 양지역 자매결연체결 제안

- ※ 우리 정부는 2000년 1국가 1지역 자매결연체결 조항을 폐지,  
현재 외교통상부는 중국과의 2개지역이상 자매결연체결에 대해 긍정적임
- '04. 11. 제1회 「CHINA-ASEANEXPO」 우리도 대표단 참가
- '05. 4. 양지역 **경제협력협약서 체결**
  - 장 소 : 충북도청, 서명 : 김영호 행정부지사 ↔ 李金부부주석
- '05. 8. 광서자치구 청소년대표단 우리도 방문연수 : 6일, 11명
- '05. 10. 제2회 「CHINA-ASEANEXPO」 우리도 대표단 참가
- ※ **CJB 청주방송과 광서TV 자매결연체결 : 2005. 10.**

## 다. 주요 내용

- 자매결연체결
  - 체결예정 : 2007년 6월 예정
  - 체결장소 : 광서장족자치구 남녕시
  - 체결방법 : 충청북도 대표단(도지사외)방문 협정서 서명·교환
- 자매결연 협정서의 주요내용
  -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,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기로 합의
  - 공무원·경제·농업·임업·대학·청소년·체육·문화 및 각종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상호 공동발전 도모
  - 항상 상호연락을 통해 교류협력 사업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

### 3. 검토의견

#### (산업경제전문위원 신 순 섭)

-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광서장족자치구간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은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무원·경제·농업·임업·대학·청소년·체육·문화 및 각종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상호 공동발전 도모를 통하여 자치단체 간 비교우위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나,
-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1인당 GDP 746불의 광서장족자치구와 경제정보 교류 및 무역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분은 당분간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우리 도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 및 약 32배에 달하는 인구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어,
- 향후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중국과 타 자치단체와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와 자매결연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은 중국 서남부지역 및 아세안 10개국과의 교류 거점확보 측면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## 9. 첨부서류

- 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광서장족자치구간  
자매결연협정서

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광서장족자치구간

## 자매결연협정서

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광서장족자치구는(이하 “양도·구” 라 한다)는 한·중 양국 수교원칙에 근거하여 한·중 양지역 주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우호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에 동의한다.

1. 양 도·구는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,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다.
2. 양 도·구는 상호신뢰와 우의를 기초로 하여, 공무원·경제·농업·임업·대학·청소년·체육·문화 및 각종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한다.
3. 양 도·구의 책임자와 관계부서는 항상 상호연락을 통해 교류협력 사업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다.
4. 본 협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본 협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어느 일방이 효력정지의 의견을 제안하지 않는 한 연장된다.
5. 본 협정서는 한·중 두 문자로 2부를 작성하여 2007년 월 일 광서장족자치구 남녕에서 양지역 대표가 서명한 후 각1부씩 보관하며 양국어 문서의 효력은 동일하다.

대한민국 충청북도지사

중화인민공화국 광서장족자치구 주석